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이 예 지

- 01 I. 논의 배경 및 목적
- 02 II.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실시
현황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
- 07 III.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 20 IV.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의
개선 방향
- 25 V. 결론

요 약

□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의 원인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과세체계 문제점이 지적됨

- 배당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의 연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6~45%),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14%)되나, 상장주식 자본이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임퓨테이션 방법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가 불완전하게 조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충족시 배당소득 분리과세(3단계 초과누진세율)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됨

□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배당현황, 업종, 재무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대주주(1년 이상) 주식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세수 감소, 포괄적 분리과세 도입시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I. 논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2025년 3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PBR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1.4로 미국(4.2), 영국(3.3), 인도(5.5) 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당성향 역시 27.2%로, 분석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정책의 원인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의 연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 된다. 이에,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배당소득세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배당세액공제를 활용하는 임putation(Imputation) 방법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데, 이는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는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7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고배당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낮은 주주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 국가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살펴보고, 이 중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도입된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의의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김선임·손달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5.3.17.

II.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실시 현황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

1.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실시 현황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쟁점 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 상장법인²⁾의 최근 3년간 배당실시 현황과 추세를 확인한다.³⁾ <표 1>을 보면, 2024년 12월 결산법인 804개사 중 70.2%인 564개사가 현금배당⁴⁾을 실시하였고, 2024년 연간 현금배당은 총 45조 5,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나, 평균 배당성향은 34.7%로 전년 39.9% 보다 5.1%p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의 전년대비 순이익이 26.9% 증가하여 배당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배당정책이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속배당 현황을 살펴본다. Panel B에 의하면, 2024년 전체 배당기업의 94.1%인 531개사가 2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실시하였고 5년 이상 연속 배당 실시 기업은 80.7%인 455개사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연속 배당 실시 기업의 2024년 현금배당은 41조 1,732억원으로 전체 현금배당의 90.4%를 차지하고, 배당성향은 35.7%로 전체 배당성향 34.7% 보다 1%p 높았다. 5년 이상 연속 배당 기업과 2년 이상 4년 이하 연속 배당 기업을 비교하면, 5년 이상 연속 배당 기업의 1사당 평균 순이익이 2년 이상 4년 이하 연속 배당 기업보다 1.8배 높고, 1사당 평균 현금배당액은 2년 이상 4년 이하 연속 배당 기업의 2.5배이며, 배당성향은 10.9%p 높았다.

Panel C는 배당성향 구간 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수를 보여준다. 배당성향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배당사의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182개사로 전체의 32.3%를 구성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 40% 미만인 기업은 108개사로 확인되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2024.12.31. 기준으로 집계되었고, 외국주권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이후 상장폐지 법인 등은 제외되었다.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2022~2024) 배당실시 현황 및 주요 장기 추이 등」 보도자료 및 관련 첨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4) 현금배당 중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간배당 실시 회사는 84개사, 중간배당액은 15.5조로 전체 현금배당(45.5조)의 34.1%를 차지한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글).

| 표 1 |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2022~2024년) 배당실시 현황

Panel A: 최근 3년간 현금배당¹⁾ (단위: 개사, 억원, %, %p)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평균 ⁵⁾
배당사 수	559	558	564	560
전체대상사(비중) ²⁾	782 (71.5)	794 (70.3)	804 (70.2)	793(70.7)
현금배당금	398,276	411,578	455,211	421,688
증감률(%)	0.6	3.3	10.6	4.8
1사 평균	712.5	737.6	807.1	752
증감률(%)	0.3	3.5	9.4	4.4
순이익	1,101,887	1,032,527	1,310,463	1,148,292
증감률(%)	-13.0	-6.3	26.9	2.5
배당성향 ³⁾	36.1	39.9	34.7	36.9
증감(%p)	4.9	3.7	-5.1	1.2

Panel B: 연속배당(2024년 기준)

연속	배당사 수	순이익	1사당 평균 순이익	현금배당	1사당 평균 현금배당	배당성향
당기	33	48,144	1,458.9	16,454	498.6	34.2
2·3·4 연속	76	109,183	1,436.6	27,025	355.6	24.8
5연속 이상	455	1,153,135	2,534.4	411,732	904.9	35.7
총합계	564	1,310,463	2,323.5	455,211	807.1	34.7

Panel C: 배당성향 별 배당사 수(2024년 기준)

구분	적자배당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40% 미만	배당성향 25% 미만
배당사 수	56	182	108	218
(비중) ⁴⁾	(9.9)	(32.3)	(19.1)	(38.7)
배당성향 평균	-	99.9	32.0	15.3

※ 주: 1) 연간 현금배당: 결산+중간배당, 우선주를 포함, 2) 배당사 수/전체대상사 수, 3) 현금배당 실시 기업의 현금배당금 총액/당기 순이익총액, 4) 배당성향 구간 배당사 수/전체배당사 수(564개사), 5) 3년 평균은 각 연도(2022~2024) 값의 산술평균임

※ 자료: Panel A, B(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2022~2024) 배당실시 현황 및 주요 장기 추이 등」 보도자료, 2025.5.12.), Panel C(「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 (2022~2024) 배당실시 현황 및 주요 장기 추이 등」 첨부자료, 2025.5.12.」 중 회사별 배당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함)

기업의 배당정책은 업종,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금배당 실시 현황을 살펴본다. <표 2> Panel A는 업종별 배당실시 현황을 보여준다. 배당실시 기업의 비중은 2022년과 2023년에는 금융업이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전기·가스업이 1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은 금융업(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배당성향은 2022년에는 기타제조업이 135.2%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는 오락·문화업(267.2%), 통신업(58.4%), 금융업(53.4%) 순이었으며, 2024년에는 비금속업(85.6%), 유통업(79.2%), 통신업(73.7%) 순으로 나타났다.

Panel B는 자산규모별 배당 현황을 보여준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현금배당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현금배당의 75.6%를 차지하였다. 자산규모별 배당성향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의 배당성향이 전체 평균보다 각각 1.3%p, 2.6%p 높았으며 2024년에는 대체로 전 자산 구간에서 배당성향이 33%에서 3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2 |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자산규모 별 현금배당 현황

Panel A: 주요 업종별 최근 3년간(2022~2024년) 현금배당 현황

(단위: 개사, 억원, %)

업종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사 수	배당사 수	순이익	배당성향	대상사 수	배당사 수	순이익	배당성향	대상사 수	배당사 수	순이익	배당성향
금속	58	41	28,851	61.14	62	42	32,614	48.49	62	43	32,806	50.78
기계·장비	29	18	7,494	64.15	30	18	14,365	40.19	32	18	13,354	38.14
비금속	21	18	4,688	82.57	22	18	9,049	41.01	21	17	2,778	85.62
섬유·의류	27	18	11,378	15.83	28	18	8,978	19.58	28	19	8,132	21.83
운송장비·부품	56	35	81,549	47.19	57	39	193,905	30.80	57	41	253,048	27.51
음식료·담배	37	30	22,621	45.51	37	31	25,833	41.90	37	31	26,230	43.91
의료·정밀기기	8	6	10,854	10.87	8	5	1,472	11.42	8	6	1,246	36.72
전기·전자	63	37	334,450	34.44	65	37	248,425	46.06	67	34	466,021	26.79
제약	45	28	15,370	19.86	45	27	14,866	20.75	45	28	18,757	20.08
종이·목재	19	12	2,256	30.32	19	11	1,276	50.12	19	9	1,229	36.08
화학	100	84	92,327	37.40	103	82	49,998	37.88	102	83	26,954	68.99
제조업·기타	8	4	180	135.20	8	4	1,042	16.74	8	5	864	23.10
제조업	471	331	612,017	37.87	484	332	601,823	39.05	486	334	851,419	29.99
IT 서비스	23	15	40,610	16.18	24	16	26,698	24.56	25	18	40,818	17.47
건설	29	20	15,365	27.35	28	14	10,877	26.43	28	15	7,906	41.31
부동산	3	2	1,465	23.56	3	2	1,245	21.80	3	2	302	60.98
오락·문화	13	6	2,588	45.53	13	7	1,035	267.20	14	6	6,643	43.92
운송·창고	24	12	140,547	8.53	25	13	33,864	32.06	25	14	67,304	17.86
유통	62	42	43,531	33.91	65	44	48,580	32.94	66	43	23,166	79.19
일반서비스	34	26	8,681	62.58	33	25	12,607	52.53	35	29	24,035	43.00
전기·가스	10	7	1,618	37.88	10	7	1,963	32.21	10	10	20,444	18.25
통신	5	4	22,849	66.30	5	4	26,345	58.42	5	4	20,849	73.71
비제조업·기타	3	3	382	28.26	3	2	268	33.17	3	1	227	34.78
금융	61	61	113,669	61.48	64	61	136,785	53.35	67	61	120,861	65.73
비제조업	269	198	391,305	33.28	273	195	300,268	44.97	281	203	332,554	45.95
금융업	40	30	98,566	36.80	37	31	130,437	31.81	37	27	126,491	37.19
총합계	782	559	1,101,887	36.14	794	558	1,032,527	39.86	804	564	1,310,463	34.74

Panel B: 자산규모 구간별 최근 3년간(2022~2024년) 현금배당 현황

자산규모 구간	2022년				2023년				2024년			
	배당사 수	순이익	현금배당	배당성향	배당사 수	순이익	현금배당	배당성향	배당사 수	순이익	현금배당	배당성향
2조원 이상	54	809,260	295,049	36.46	57	746,567	317,171	42.48	60	989,491	345,055	34.87
5천억원 이상	60	153,080	49,871	32.58	63	119,833	40,029	33.40	74	161,974	52,681	32.52
2조원 미만												
1천억원 이상	184	131,758	40,159	30.48	185	125,491	40,970	32.65	182	119,869	43,742	36.49
5천억원 미만	261	38,168	13,199	34.58	253	40,758	13,408	32.90	248	39,129	13,735	35.10
1천억원 미만												
총합계	559	1,132,267	398,278	35.18	558	1,032,649	411,578	39.86	564	1,310,463	455,211	34.74

※ 주: 1) 업종: 한국거래소 업종코드 기준, 제조업, 기타, 비제조업, 기타(세부업종을 미표기한 11개사), 금융(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4.7.1.)으로 기존 일반서비스에서 금융으로 업종 재분류된, 비금융지주회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4.7.1.) 전인 2023년, 2022년의 경우 현재 해당하는 업종분류를 따름, 2) 대상사 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외국주관법인 등 제외), 3) 배당사 수: 배당실시법인(우선주만 배당한 경우도 포함), 4) 현금배당금: 결산+중간배당, 우선주 포함, 5) 배당성향=(개별회사 현금배당 단순합)/(개별회사 순이익 단순합) (단 당기순손실인 경우 배당성향은 산출하지 않음)

※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2022~2024) 배당실시 현황 및 주요 장기 추이 등」 첨부자료, 2025.5.12. 일부 발췌

요약하면, 12월 말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배당사 비중은 평균 70.7%이고, 현금배당 규모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배당성향은 최근 3년 평균 36.9%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기업이 일정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고자 하는 배당 안정화 현상(Dividend smoothing)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기업의 배당성

향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2024년 기준으로 배당성향이 가장 큰 업종은 비금속 업종 85.6%, 가장 작은 업종은 IT 서비스 17.5%였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현금배당규모가 전체 현금배당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배당성향은 2024년의 경우 전 자산 구간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종전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정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현금배당 현황은 배당확대를 위한 조세 정책 설계시 기업의 재무·업종 특징과 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쟁점

가.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배당소득세와 기업의 배당정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⁵⁾ 첫 번째는 전통적 관점으로, 기업의 배당수준은 배당으로 인한 한계효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여기서, 배당에 대한 한계효익에는 기업의 미래이익에 대한 긍정적 신호효과와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문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계비용으로 작용하는데, 배당소득세로 인해 주주의 세후 배당소득이 감소하고 주주는 이를 보전받기 위해 기업에게 높은 세전수익률을 요구하며, 이는 곧 기업의 자본비용 상승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높은 배당소득세부담은 기업 입장에서 배당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그 만큼 배당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두 번째 관점은 배당소득세는 기업의 배당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이 관점은 주가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⁶⁾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배당소득세율의 변화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 중, 배당정책과 세금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확보를 강조한다. 주주는 주식 보유시 배당소득, 처분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으며, 두 소득의 원천은 동일한 자산에서 발생하므로 경제적 실질은 유사하다. 이는 다시 말해, 두 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클수록 투자자들에게 조세차익(Tax arbitrage)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Poterba and Summers(1985)는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주식과 과세주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과세주식의 할인율과 과세주식의 세후할인율이 동일한 경우 주주는 두 주식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무차별함을 식(1)을

5) Hanlon, M. and S. Heitzman,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127-178. 2010.

6) 배당소득세는 개인주주들에게 과세되는 세금인데, 법인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법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등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미미함) 연기금 등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통해 증명하였다. 즉 식(1)에서 $\frac{t_d - t_{cg}}{1 - t_{cg}}$ 은 자본이득세부담(t_{cg})보다 배당소득세부담(t_d)이 높은 경우에 주주들이 과세주식에 대해 추가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배당소득세 불이익지수(Dividend Tax Penalty, DTP)로 일컫는다.⁷⁾ 배당소득세 불이익지수는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큰 경우 주식 투자자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소득에 대한 조세중립성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⁹⁾

$$R = \frac{r}{1 - t_{cg}} + \frac{t_d - t_{cg}}{1 - t_{cg}} d \quad (\text{식 1})$$

* R : 과세주식의 세전요구수익률, r : 비과세주식 할인율, t_{cg} : 자본이득 실효세율, t_d : 배당소득 실효세율, d : 배당수익률

나.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

법인은 과세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후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때,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급받는 주주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이중과세 조정방식은 크게 주주단계에서 과세하되,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법과 법인단계에서만 과세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된다.¹⁰⁾ 이하에서는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OECD는 개인 주주단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¹¹⁾ 먼저, 고전적 방법(Classical system, CL)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투자의 재원이 각각 주식, 저축으로 다를 뿐 소득의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소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 고전적 방법(Modified classical system, MCL)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는 CL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분포함 방법(Partial inclusion, PIN)은 배당소득 전부가 아닌 배당소득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의 7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배당소득의 30%가 이중과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

7) 선행연구들은 '1-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 (t_d - t_{cg}) / (1 - t_{cg})$)'를 배당소득세 선호지수(dividend tax preference)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해석상 배당소득의 세금편익을 의미하므로, 배당소득세가 자본이득세보다 유리할수록 기업의 배당이 증가한다고 예상한다(차병섭·이영, 「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권 제4호, 2007.). 배당소득세 선호지수와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는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일한 개념이나,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는 주식 자본이득세보다 불리한 배당소득세부담을 나타내는 배당의 한계자본비용($t_d - t_{cg}$)/(1- t_{cg})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한다.

8) 조세중립성이란 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세금은 효율적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의안번호 2103324)」, 2020.11., p.120).

9) 이예지,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현안분석 제325호), 2024.7.24., pp.3~4.

10)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23판, 서울: 삼일인포마인, 2023.

11) 'Harding, M. and Marten, M.,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s, interest and capital gains: The debt equity bias at the personal level",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34), 2018.'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는 것이다. 임퓨테이션(Imputation)은 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액(귀속법인세액)을 주주가 수령한 배당소득에 가산(Gross-up)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로 차감하는 방식이다(식 2-1). 임퓨테이션의 경우 귀속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율이 법인세율과 동일하면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나(Full imputation, FI), 법인세율보다 낮으면 이중과세가 불완전하게 조정된다(Partial imputation, PI). 따라서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닌 경우 임퓨테이션 방식하에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실효세율을 파악하여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¹²⁾

$$\begin{aligned} & \{ \text{배당금} + \text{귀속법인세액} (= \text{배당금} \times \text{Gross-up 비율}) \} \times \text{세율} - \text{귀속법인세액} \quad (\text{식 2-1}) \\ & \text{Gross-up 비율} = \text{배당세액공제율} / 1 - \text{배당세액공제율} \quad (\text{식 2-2}) \end{aligned}$$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주주의 실질적인 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당소득 과세제도 논의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시사한다.

Ⅲ.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배당소득 과세제도

제3장에서는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제도시 주요 쟁점인 조세중립성과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제도를 비교·분석한다.¹³⁾ 비교분석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제시되는 세율은 부가세(Surtax)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1. 우리나라

가. 과세체계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품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소득원천에 따라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배당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으로,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¹⁴⁾ 또한 회사가 주주에게

12) 전병목·송은주·서동연,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세법연구 2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109.

13) '이예지,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현안분석 제325호), 2024.7.24.의 제3장'을 바탕으로, 과세체계의 주요 내용을 최근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1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배당의 형태로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 않았지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의제배당).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되는데, 연간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¹⁵⁾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고(6~45%),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세율 14%).¹⁶⁾ 한편, 배당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¹⁷⁾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초과하여도 무조건 원천징수(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무조건 분리과세). 반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세 산정시 배당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어 후술할 양도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차감되지 않는다. 분리과세시 배당소득세액은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종합과세시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 임퓨테이션을 적용하므로, 앞서 살펴본 식(2-1)에 따라 배당소득세액이 산정된다. 즉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액(배당소득의 10%)’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¹⁸⁾ 여기서, 임퓨테이션방법이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조정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배당세액공제율은 10%이다. 이는 4단계초과누진 법인세율(9%, 19%, 21%, 24%)¹⁹⁾ 중 가장 낮은 9%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즉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액공제율은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이중과세 문제가 불완전하게 조정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우리나라 배당소득 과세제도가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재고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 외의 자산 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소득세법」은 자본이득 중 실현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언급한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집적된 소득이 매매 등의 행위로 일시에 실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 자산 처분연도에 일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

15) 금융소득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16) 비영업대금이익 및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은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시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항 각 호).

17)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소득

18)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및 제56조

19) 「법인세법」 제55조

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한다. 이를 완화하고자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²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양도소득에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에 한해 과세되는 반면, 주권비상장법인과 국외주식은 모두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주주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이하하며(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1년 미만 30%²¹⁾), 소액주주는 중소기업이면 10%, 그 외의 기업은 20%이다.²²⁾²³⁾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시 대주주에 대한 판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하며, 자세한 요건은 <표 3>과 같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 기본공제’이며,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별로 연 250만원이다.²⁴⁾ 양도차손은 오직 동일 자산 내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²⁵⁾

표 3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의 범위

구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장내 거래	장외 거래	장내 거래	장외 거래	장내 거래	장외 거래	
대주주	과세 여부	○	○	○	○	○	○	○
	①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②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²⁶⁾
대주주 이외 주주 과세 여부		X	○	X	○	X	○	○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40억원 이상

※ 자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제167조의 8 규정을 토대로 요약

한편,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고배당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였다. 해당 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²⁶⁾이어야 한다. 둘째,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

2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 각 호

21)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한 30%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2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23)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중소기업은 10%이다.

24)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25)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26) 코넥스 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상 배당이 증가(5% 증가 요건)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소득은 중간·분기·결산배당으로 지급된 현금배당이며, 적용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35% 세율이 적용된다.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²⁷⁾

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이 세제개편안에 제시되었다.²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의 형태로 환류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률에 미달할 경우(미환류소득),²⁹⁾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이월된 초과환류액’의 2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추가 과세하는 특례 제도이다. 이는 본래 2015년에 기업부문의 배당·투자 확대 및 고용증대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환류대상항목에 배당, 투자, 고용증대가 포함되었으나, 2018년부터 환류대상 항목에 배당을 제외하고 현재의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표 4〉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정도를 현행과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Poterba and Summers(1985)에서 도출된 DT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식 3). 비교·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상장주식에 대한 DTP는 소액주주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DTP 측정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실효세율(t_d)과 주식 자본이득 실효세율(t_{cg})을 산정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실효세율은 분리과세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 분리과세 세율로 측정하였다. 한편, 종합과세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 명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³⁰⁾ 자본이득 실효세율은 상장주식 자본이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 주식 자본이득세 명목세율로 측정하였다.

27)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19.

28) 기획재정부, 앞의 글, p.20.

29)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과세방식에 따른 미환류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현행 기준〕

· 투자포함방식: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액×3)

· 투자제외방식: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액×3)

〔2025년 세제개편 개정안〕

· 기업소득 비율 상향: (투자포함방식)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투자제외방식)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일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30) OECD, ‘Combined (corporate and shareholder)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 income’ 순 개인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였다(단, OECD는 부가세(surtax)가 포함됨).

$$DTP = \frac{t_d - t_{cg}}{1 - t_{cg}} \quad (\text{식 3})$$

* t_d : 배당소득 실효세율, t_{cg} : 자본이득 실효세율

Panel A는 현행 과세체계 하의 배당소득과 주식자본이득 실효세율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실효세율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소액주주보다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가 낮으며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오히려 자본이득세부담이 배당소득세부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Panel B는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배당소득 실효세율과 DTP의 변화를 보여준다. 현행과 비교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여전히 불리하였으나,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DTP가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0.118 감소, 3억원 초과 구간은 0.045 감소하였다. 한편, 대주주(1년 이상)의 경우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세부담이 일치하였으나,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 세율 보다 높아 배당소득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비교

Panel A: 현행 과세체계

구분		소액주주	대주주 (1년 이상)
분리과세		DTP : 0.140 (t_d : 14.0%, t_{cg} : 0%)	DTP : -0.075 (t_d : 14.0%, t_{cg} : 20.0%)
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DTP : 0.318 (t_d : 31.8%, t_{cg} : 0%)	DTP : 0.148 (t_d : 31.8%, t_{cg} : 20.0%)
	3억원 초과	DTP : 0.395 (t_d : 39.5%, t_{cg} : 0%)	DTP : 0.193 (t_d : 39.5%, t_{cg} : 25.0%)

Panel B: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구분		소액주주	대주주 (1년 이상)
분리과세		DTP : 0.140 (t_d : 14.0%, t_{cg} : 0%) Δ DTP: 0	DTP : -0.075 (t_d : 14.0%, t_{cg} : 20.0%) Δ DTP: 0
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DTP : 0.200 (t_d : 20.0%, t_{cg} : 0%) Δ DTP: -0.118	DTP : 0 (t_d : 20.0%, t_{cg} : 20.0%) Δ DTP: -0.148
	3억원 초과	DTP : 0.350 (t_d : 35.0%, t_{cg} : 0%) Δ DTP: -0.045	DTP : 0.133 (t_d : 35.0%, t_{cg} : 25.0%) Δ DTP: -0.060

※ 주: 1) $DTP = (t_d - t_{cg}) / (1 - t_{cg})$ (식3), Δ DTP: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DTP-현행 과세체계 DTP

2) t_d : 배당소득 실효세율

(현행 과세체계) 배당소득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여 배당소득 실효세율은 $\{(1,000,000 + \text{귀속법인세액 } 100,000) \times \text{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최고 명목소득세 세율} - \text{배당세액공제 } 100,000\} / 1,000,000$ 으로 산정함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45%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최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함

3) t_{cg} : 주식 자본이득 실효세율, 대주주 1년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 주식 자본이득세 명목세율을 적용함

나. 배당소득 신고현황

〈표 5〉는 2023 귀속연도 기준, 배당소득 신고현황을 보여준다. Panel A는 무조건 분리과세 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현황으로, 전체 배당소득금액은 29조 4,132억원이고, 이 중 종합과세대상은 65.3%인 19조 1,970억원이다. Panel B는 금융소득 규모 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신고현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득금액은 32조 4,928억원이고, 이 중 배당소득금액은 21조 7,392억원이며³¹⁾, 실효세율은 28.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실효세율은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득 규모 별로 살펴보면, 금융소득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1%에서 30%이며, 금융소득 3억원 초과시 실효세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배당소득 신고현황 (2023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Panel A: 무조건 분리과세 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신고현황¹⁾

구분	배당소득 규모 (초과, 이하)	인원수	배당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소득세)
분리과세	~1천만원	17,178,058	7,590,843	1,001,208
	1천만원~2천만원	182,714	2,625,380	357,089
	소계	17,360,772	10,216,223	1,358,297
종합과세	2천만원~3천만원	50,196	1,206,445	164,289
	3천만원~4천만원	22,595	778,375	106,437
	4천만원~5천만원	13,754	615,660	84,459
	5천만원~1억원	27,167	1,882,662	259,353
	1억원~5억원	22,086	4,368,043	605,725
	5억원~	4,787	10,345,884	1,443,032
	소계	140,585	19,197,068	2,663,294
합계		17,501,357	29,413,291	4,021,591

Panel B: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¹⁾

금융소득 규모 (초과, 이하)	인원 수	전체 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비중 ²⁾)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³⁾
~2천만원	2,686	383,208	14,239	3,565	(0.9)	365,796	86,750	23.7
2천만원~3천만원	135,869	13,961,321	3,274,218	1,079,002	(7.7)	12,780,602	2,771,932	21.7
3천만원~4천만원	59,903	7,621,186	2,059,833	770,843	(10.1)	7,100,339	1,646,727	23.2
4천만원~4.6천만원	22,104	3,149,596	946,443	389,301	(12.4)	2,945,228	697,741	23.7
4.6천만원~6천만원	32,635	5,654,270	1,708,512	765,608	(13.5)	5,352,587	1,344,480	25.1
6천만원~8천만원	24,323	5,027,994	1,674,697	819,473	(16.3)	4,785,788	1,246,590	26.0
8천만원~8.8천만원	6,235	1,429,675	523,108	277,210	(19.4)	1,358,783	360,586	26.5
8.8천만원~1억원	7,196	1,851,424	675,061	363,739	(19.6)	1,765,811	484,360	27.4
1억원~2억원	25,465	8,583,777	3,484,314	2,156,060	(25.1)	8,223,279	2,380,095	28.9
2억원~3억원	7,494	3,821,390	1,813,937	1,253,990	(32.8)	3,693,976	1,141,917	30.9
3억원~5억원	5,454	4,088,876	2,074,931	1,527,670	(37.4)	3,946,397	1,272,356	32.2
5억원~	6,882	19,340,414	14,243,588	12,332,743	(63.8)	19,046,782	6,782,458	35.6
합계	336,246	74,913,130	32,492,881	21,739,204	(29.0)	71,365,368	20,215,993	28.3

※ 주: 1) Panel A는 무조건 분리과세 외(비과세 제외) 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상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신고현황임. Panel B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의 과세표준, 결정세율, 실효세율은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임 2) 비중(%) = 배당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 3) 실효세율(%) = 결정세액/과세표준

※ 자료: '국세청, 「배당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현황 화신자료」, 2025.7.'을 토대로 재정리함

31) 납세의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므로,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과 지급명세서상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

가. OECD 국가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표 6〉은 2025년 기준, OECD 국가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유형과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순소득세,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를 고려한 배당소득세 세율을 보여준다. 먼저,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유형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복잡한 계산 과정이 수반되는 임퓨테이션 방법보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고전적(CL)·수정 고전적(MCL)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고전적 방법으로 독일 등 16개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수정 고전적 방법(MCL)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채택된 것은 부분포함방법(PIN)과 완전 조정 임퓨테이션(FI)으로 각각 프랑스, 캐나다 등 4개 국가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불완전 조정 임퓨테이션 방법(PI)은 칠레, 콜롬비아 3개 국가에 그쳤다.

표 6 | OECD 국가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유형 (2025년 기준)

(단위: %)

이중과세 조정유형	국가	법인세율	순 개인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전체 (순 개인소득세+법인세)세율	배당소득 총 납부세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CL	Austria	23.00	27.50	44.18	52.07
	Belgium	25.00	30.00	47.50	52.63
	Costa Rica	30.00	15.00	40.50	74.08
	Czechia	21.00	23.00	39.17	53.61
	Germany	30.06	26.38	48.51	61.97
	Iceland	20.00	22.00	37.60	53.19
	Ireland	12.50	51.00	57.13	21.89
	Israel	23.00	35.00	49.95	46.00
	Italy	24.00	26.00	43.76	54.84
	Lithuania	16.00	15.00	28.60	55.94
	Netherlands	25.80	31.00	48.80	52.87
	Poland	19.00	19.00	34.39	55.25
	Slovak Republic	24.00	7.00	29.32	81.86
	Slovenia	22.00	25.00	41.50	53.01
	Spain	25.00	30.00	47.50	52.63
	Sweden	20.60	30.00	44.42	46.38
CL 유형 평균		22.56	25.80	42.68	54.26
MCL	Denmark	22.00	42.00	54.76	40.18
	Greece	22.00	5.00	25.90	84.94
	Portugal	30.50	28.00	49.96	61.05
	Switzerland	19.61	22.16	37.42	52.40
	United Kingdom	25.00	39.35	54.51	45.86
	United States	25.57	28.67	46.91	54.51
MCL 유형 평균		24.11	27.53	44.91	56.49
PIN	Finland	20.00	28.90	43.12	46.38
	France	36.13	34.00	57.85	62.46
	Luxembourg	23.87	21.00	39.86	59.89
	Türkiye	25.00	20.00	40.00	62.50
PIN 유형 평균		26.25	25.98	45.21	57.81

|표 6| OECD 국가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유형 (2025년 기준)

(단위: %)

이중과세 조정유형	국가	법인세율	순 개인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전체 (순 개인소득세+법인세)세율	배당소득 총 납부세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FI	Australia	30.00	24.29	47.00	63.83
	Canada	25.98	39.34	55.10	47.15
	Mexico	30.00	17.14	42.00	71.43
	New Zealand	28.00	15.28	39.00	71.79
FI 유형 평균		28.50	24.01	45.78	63.55
PI	Chile	27.00	23.90	44.45	60.74
	Colombia	35.00	20.00	48.00	72.92
	Korea	26.40	44.45	59.12	44.66
PI 유형 평균		29.47	29.45	50.52	59.44
OTH	Hungary	9.00	15.00	22.65	39.74
	Japan	29.74	20.32	44.02	67.57
	Norway	22.00	37.84	51.52	42.71
NST	Estonia	22.00	0.00	22.00	100.00
CD	Latvia	20.00	0.00	20.00	100.00
OTH, NST, CD 유형 평균		20.55	14.63	32.04	70.00
평균		24.10	24.72	42.84	58.45

※ 주: 1) OECD의 'Combined (corporate and shareholder)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 income'은 법인세 차감 후
 세후이익(100으로 가정)을 모두 개인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한다는 가정하에 배당소득에 대한 '순개인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전체(순 개인소득세+법인세) 세율, 배당소득 총납부세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
 2) 이중과세조정 유형(CL: 고전적 방법, MCL: 수정 고전적 방법, PIN, 부분포함 방식, FI: 완전조정 임퓨테이션, PI: 부분조정 임퓨
 테이션, OTH: 기타, CD: 법인단계 공제), 법인세율(배당이익에 적용되는 한계 법인세율로 일반적으로 최고 명목법인세율(surtax
 포함)임), 순개인소득세(개인 주주단계에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공제 및 그로스업 규정을 반영하여* 주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순 최고 명목세율), 배당소득에 대한 전체(순개인소득세+법인세)세율(=(법인세(=세전 배당가능이익-배당지급액)+순개인소득세)
 /세전 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 총납부세액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법인세/배당소득 총납부세액(=순개인소득세+법인세))
 * 임퓨테이션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순개인소득세 : (Gross-up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100)-배당세액공제액
 자료: 'OECD, Combined (corporate and shareholder)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 income, <<https://data-explorer.oecd.org/>, 최종 검색일: 2025.7.1.'을 토대로 재정리함

OECD 자료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세율뿐만 아니라 법인단계의 세부담까지 반영한 전체 배
 당소득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
 서는 법인세가, 주주단계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
 다. <그림 1>을 보면, OECD 전체 배당소득세율 평균은 42.84%이고, 이중과세 조정 유형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조정 임퓨테이션 방법이 50.52%로 가장 높고, 고전
 적방법이 42.68%로 가장 낮으며, 수정 고전적 방법, 부분포함, 완전조정 임퓨테이션이 약 45%
 수준이다. 아울러 총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전체 배당소득세율이 59.12%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불완전할 경우 배당과 유보 간 조세중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그림 1 | OECD 국가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유형별 배당소득 전체세율 (2025년 기준)



※ 주: <표 6>을 토대로 작성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였다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미국,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 과세체계를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 여부에 따라 다르다.³²⁾ 적격배당은 내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Qualified foreign corporation)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배당락일(ex-dividend date) 60일 전부터 시작하여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적격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분리과세시 세율은 개인의 연간소득 구간에 따라 15·20%이다.³³⁾ 한편, 적격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비적격배당)의 경우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합산하여 종합과세(10~37%³⁴⁾)되며,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식 자본이득도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요약하면, 미국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은 적격배당에 대해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고, 일반소득세율로 과

32)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4-25」, 2025. pp.1,659~1,665'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3) 2025 과세연도 독신자 기준, 과세소득(USD) 47,026~518,900인 경우 15%, 과세소득 518,900 초과시 20% 세율이 적용된다(IRC §1(h)).

34) 연방소득세율은 납세자 지위에 따라 개인단위과세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 공동신고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및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 4종으로 세분되어 있다. 2025 과세연도 독신자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소득(USD) ~11,925: 10%, 11,926~48,475: 12%, 48,476~103,350: 22%, 103,351~197,300: 24%, 197,301~250,525: 32%, 250,526~626,350: 35%, 626,350~: 37%이다(IRC §1).

세되는 비적격배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지 않다.³⁵⁾ 아울러 미국은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 적격배당 간에,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자본이득과 비적격 배당 간에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2) 독일

독일은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종합과세하였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운영하고 있었다. 2000년 12월 이전까지는 완전임퓨테이션방법을 적용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임퓨테이션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2001년에 이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의 50%만 과세하는 절반과세제도(Half-income system)로 전환하였다(OECD 자료, 부분포함 방식에 해당).^{36) 37)}

2009년, 독일 정부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이원적 소득세제(Abgeltungsteuer)³⁸⁾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독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부분조정에서 고전적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이원적 소득세제 하에서 금융소득은 25% 단일세율을 적용한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sueuer)로 과세가 종결된다. 금융소득 산정시 실제 필요경비는 차감되지 않고 대신 1인당 1,000 EUR(부부 합산 과세시³⁹⁾ 2,000 EUR)가 일괄공제된다(Sparer-Pauschbetrag).⁴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Substantial interest, 중대한 지분)인 경우에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14~45%). 이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장치로 부분포함 방법이 적용되어 과세소득은 배당(또는 주식자본이득)소득의 60%로 산정된다.⁴¹⁾

35)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44.

36) 위의 글, pp.77~78, 111.

37) 절반과세제도 하에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이 개인 또는 사업용 지분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위의 글, p.78.).

38)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을 감안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하는 제도로(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13-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독일은 2003년 논의를 시작으로, 2006년 수정된 이원적 소득세제가 제안되었고, 2009년에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되었다(오윤,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8권 제2호, 2012, p.185).

39) 독일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위와 부부단위주위의(2분 2승제) 중 선택할 수 있다.

40) EstG §20(9)

41) EstG §3(40)

요약하면, 독일은 2009년 이월적 소득세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해당 과세체계 하에서 배당소득 이중과세는 일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고전적 방법, 중대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은 부분포함 방식에 따라 조정한다.

(3) 영국

영국은 2016년 4월 5일 이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하였다가,⁴²⁾ 2016년 4월 6일부터 배당금 공제방식(Dividend allowance)으로 전환되었다.⁴³⁾ 현재 배당소득은 투자소득에 포함되며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 배당소득 과세표준은 배당소득에서 배당금 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되며, 배당금 공제(2024-2025 과세연도 기준)는 500 GBP로, 이는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⁴⁴⁾⁴⁵⁾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⁴⁶⁾ 기본세율 구간(basic rate) 8.75%, 고세율 구간(higher rate) 33.75%, 추가세율 구간(additional rate) 39.35%이다. 이는 각 구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20%, 40%, 45% 보다 낮으므로 분류과세 성격을 가진다.⁴⁷⁾

영국은 모든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배당소득과는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자본이득에서 연간면제금액, 당기 공제가능 자본손실,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으로 산정된다. 자본이득 연간면제금액은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3,000 GBP, 신탁 1,500 GBP이며, 주식 자본이득세 세율(2024.10.30. 이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자본이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기본세율 소득구간이면 18%, 해당 소득구간 초과시 24%이다.⁴⁸⁾

요약하면, 영국은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동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비교하면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보다 낮지만, 그 외 구간에서는 주식 자본이득세율이 낮다. 또 다른 세부담 결정요인인 면제금액은 배당소득 500 GBP 보다 주식 자본이득이 3,000 GBP로 높다. 아울러 영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류과세와 배당금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2) 2016년 4월 5일 이전에는 수령한 배당금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배당가산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가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전병목·이승식,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세법연구 06-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p.24.).

43)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67., 전병목·이승식, 앞의 글, p.24.

44)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63.

45) 이러한 이유로 OECD는 이를 수정 고전적 방법으로 분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46) 배당소득세율을 판단하는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합하여 판단한다.

47) 위의 글, p.61.

48) 영국정부 홈페이지, *Capital Gains Tax: what you pay it on, rates and allowances*, <<https://www.gov.uk/capital-gains-tax/rates>>, 최종 검색일: 2025.8.8.)

(4) 프랑스

프랑스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법을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다. 2005년에 완전임퓨테이션을 폐지하였고, 2007년까지 배당소득의 50%만 과세하는 부분포함방식을 적용하였다.⁴⁹⁾ 이후 현재는 개인의 배당소득은 12.8% 단일세율(17.2% 사회보장세 추가)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나, 납세의무자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방식(11~45%)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시 배당금의 60%에 대해 과세한다.⁵⁰⁾⁵¹⁾

아울러 프랑스는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현행 배당소득 과세체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시 세율은 배당소득과 같다.⁵²⁾⁵³⁾ 따라서 프랑스는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일본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보유 주식의 상장주식인지 여부와 지분율에 따라 결정된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중 지분율이 3% 이상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5~45%).⁵⁴⁾⁵⁵⁾ 종합과세시 배당세액공제(5% 또는 10%)⁵⁶⁾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지분율 3% 미만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소득⁵⁷⁾에 대해서는 분리과세(15%)⁵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일본은 2003년부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신고분리과세(15%)를 시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시 임퓨테이션방법을, 분리과세시 고전적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혼합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소득은 주식 자본이득과 동일한 세율(15%)로 과세되므로, 일정 부분 조세중립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49) 전병목·송은주·서동연, p.112.

50) 'Ernst & Young(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4-25』, 2025, p.458.'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51) OECD 자료에서는 종합과세방식 체계를 고려하여 프랑스의 이중과세조정 방법을 부분포함으로 분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52)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사회보장세(17.2%)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주식을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3) 'République Française, Impôt sur le revenu-Plus-values sur valeurs mobilières, 2025.6.6.,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1618>, 최종 검색일: 2025.7.30.>'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54) 일본 과세소득(JPY) 구간별 소득세율은 ~1,950,000: 5%, 1,950,000~3,300,000: 10%, 3,300,000~6,950,000: 20%, 6,950,000~9,000,000: 23%, 9,000,000~18,000,000: 33%, 18,000,000~40,000,000: 40%, 40,000,000~: 45%이다.

55) 배당소득금액은 배당금에서 주식 취득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56) 일반소득금액이 1천만 JPY 이하이면 배당금의 10%,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반소득금액이 1천만 JPY 초과하면 배당금의 5%를 공제한다. 다만, 일반소득금액이 1천만 JPY 초과하더라도 배당소득 제외 일반소득금액이 1천만 JPY 이하이면 1천만 JPY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고,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57) 연 100,000 JPY 미만

58)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2.1% 추가(주식 자본이득에도 적용)

3. 요약 및 시사점

주요 국가의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에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단순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예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은 임퓨테이션법을 폐지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국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류하여 과세하되, 배당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들 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임퓨테이션 방법은 귀속법인세 등 과세방식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 조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보완적으로 종합과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 다만, 독일은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이를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고 이중과세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배당소득의 실질적 성격이 주주의 지분율, 보유 기간, 경영상 영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설계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성격 및 보유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과세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조세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부담이 일치한다. 미국과 일본은 두 소득의 과세체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장기보유한 주식의 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 간, 단기보유 주식의 자본이득과 비적격배당 소득 간에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의 배당소득과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소득은 주식 자본이득과 동일한 세율(15%)로 과세된다. 따라서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표 7 | 주요 국가의 과세체계 비교

구분	OECD 이중과세 조정유형	배당소득 과세제도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우리나라	PI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14%) ·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 과세(20·25·30%) · 비상장주식: 과세(소액주주 10·20%, 대주주 20·25·30%)

| 표 7 | 주요 국가의 과세체계 비교

구분	OECD 이중과세 조정유형	배당소득 과세제도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미국	MC	· 적격배당: 분리과세(15·20%) · 비적격배당: 종합과세(10~37%)			· 1년 이상: 15·20% · 1년 미만: 종합과세(10~37%)		
독일	MC	· 분리과세(25%)와 종합과세(14~45%) 중 선택 · 예외: 1% 이상 지분 종합과세* * 과세소득=배당소득×60%			좌 동		
영국	MCL	분류 과세	기본세율 고세율 추가세율	8.75% 33.75% 39.35%	분류 과세	기본세율 고세율 추가세율	18% 24%
		· 배당금공제(500 GBP)			· 자본이득 연간면제금액: 3,000 GBP		
프랑스	PI	· 분리과세(12.8%)와 종합과세(11~45%)* 중 선택 * 종합과세시 과세소득=배당소득×60%			· 분리과세(12.8%)와 종합과세(11~45%) 중 선택		
일본	OTH	·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 분리과세(15%) · 지분율 3% 이상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종합과세(5~45%)* * 배당세액공제(5·10%)			· 신고분리과세(15%)		

※ 주: OECD 이중과세 조정유형은 <표 6>의 주석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율은 부가세(Surtax)가 제외되어 있음

※ 자료: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를 토대로 재정리함

IV.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의 개선 방향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주식 자본이득보다 배당소득세부담이 높고, 불완전한 임퓨테이션 방법으로 인해 배당소득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이 배당보다 유보를 선호하게 하여 배당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배당소득세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구조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안된 고배당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확대를 위한 배당소득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고배당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배당소득이 아니라,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는 기업의 고배당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적용 요건의 충족 가능성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배당성향이 최소한 2024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검토한다.

〈표 1〉의 Panel C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34.7%이다. 고배당상장주식 분리과세의 배당성향 첫 번째 요건(5% 증가 요건 미적용 대상)인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은 전체 배당사의 32.3%인 182개사이다. 배당성향 두 번째 요건(5% 증가 요건 적용 대상)인 배당성향 25% 이상 40% 미만 기업은 전체 배당사의 19.1%를 차지하며, 해당 구간에 속한 기업의 주주가 시행 첫 해에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 증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반면, 배당성향 25% 미만 기업은 전체 배당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8.7%를 차지하고 이들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15.3%이다. 이들 기업의 주주가 시행 첫 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행 첫 해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어야 함과 동시에 5% 증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요건의 합리적 수준과 기업의 제도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은 세금 외에 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배당의 생애주기(Dividend Life Cycle)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성장 초기에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선호하고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보다 잉여현금흐름이 더 많기 때문에 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투자기회가 배당과 음(-)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차병섭과 이영 2006; 기은선과 황문호 2014). 또한 기업이 자본조달이 어려울수록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호할 수 있다(신호영과 정안수 2007).

아울러 산업 특성도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춘식 1989).⁵⁹⁾ 제2장의 업종별 현금배당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업종(비금속)의 배당성향은 가장 낮은 업종(IT 서비스) 배당성향 17.47의 약 5배인 85.62%이다. 이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업의 특성이나 특정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은 배당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격한 배당의 변동을 회피하는 배당 안정화 성향이 있다(우춘식 1998). 이는 분리과세 방안의 5% 증가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배당성향은 분모인 이익 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이익 증가 또는 감소시 적용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59) 상장기업은 과거의 배당지급 패턴, 목표자본구조 유지, 주가유지, 주가상승에 관한 관심, 미래 예상이익 수준 등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요인 외에 업계의 배당지급 관행, 공공리 수준, 미래의 경제환경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우춘식, 「현금배당정책의 횡단면적 특성과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제19권 제1호, 1989.).

둘째, 과거 정부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고배당상장주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국인의 배당소득세율을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금의 5%를 세액공제⁶⁰⁾하는 방식이었다.⁶¹⁾ 당시 고배당기업 요건은 ‘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20% 이상인 기업 중 전년 대비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 ②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50% 이상인 기업 중 전년 대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기업, ③ 신규상장기업이거나 최근 3년 내에 배당 기록이 없어서 배당 증가를 및 배당성향 요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 이상인 기업’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해당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현금배당규모와 배당성향이 증가하였으나, 현금배당규모 증가에 미친 주요 요인은 당기순이익의 증가이며, 시장 전체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⁶²⁾ 이는 복잡한 고배당기업 요건으로 인해 세제 혜택이 일부 기업에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또는 지배주주일 가능성이 높아, 수직적 형평성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는 당시 제도와 비교할 때, 현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적용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종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는 세금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 배당소득 과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장기업의 배당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의 배당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 배당성향 기준을 단일화하고, 그 기준은 시장별 배당성향,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5% 이상 적용 요건을 기업의 안정적 배당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60) 당초 도입 당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2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결산 현금배당분부 5%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62) 이상엽·홍우형,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 수직적 공평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주로 적용되어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업의 배당정책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에게 세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양립한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14%, 20%, 35%)을 적용하고 있다. 앞선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배당소득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다. 아울러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금융소득 3억원 초과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실효세율은 30%를 초과한다(<표 5> 참고). 이를 고려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일정 부분 고려한 구조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 유인효과와 과세형평성 간의 균형을 찾는 방안은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근본 과제인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35% 세율을 동일 구간의 대주주(1년 이상 기준)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인 25%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⁶³⁾

3. 세수 감소 대응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증권거래세 세율 조정이 고려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추어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5년부터 코스피는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⁶⁴⁾ 정부는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세수효과(전년 대비)는 향후 2년간 총 2조 3,345억원⁶⁵⁾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 환원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3)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2)」, 2025.4.24.

6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7.31., p.73.

65) 2026년 2조 1,400억원, 2027년 1,945억원(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31., p.26.)

| 표 8 | 2023년 이후 연도별 증권거래세율 변화

구분	코스피시장 ^{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	그 외 장외거래
2023년	0.05%	0.20%	0.10%	0.02%	0.35%
2024년	0.03% (△0.02%)	0.18% (△0.02%)	0.10%	0.18%	0.35%
2025년	0% (△0.03%)	0.15% (△0.03%)	0.10%	0.15% (△0.03%)	0.35%

※ 주: 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과세됨

※ 자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규정을 토대로 요약

한편, 증권거래세 기능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가 단기매매를 억제하여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⁶⁶⁾와 거래비용 증가로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⁶⁷⁾이 존재한다. Haberer(2004)는 거래세의 효과가 시장 유동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상된 이후 금융시장과 세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현행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므로 두 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 중 고전적 방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배당·이자·자본이득을 금융소득으로 보아 동일한 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적 특례로 설계되어 있어, 고배당상장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당소득은 그대로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따른다. 따라서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논의는 향후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는 시점에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66) 이상엽,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세무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20.,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1936, pp.158~160.

67) 문성훈·임동원,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2019.

V. 결론

배당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와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의 배당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전까지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제혜택이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두 가지의 배당성향 기준(40% 이상, 25% 이상)을 하나로 조정하고, 그 기준은 상장기업의 배당실시 현황과 추세,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배당안정화 현상 등을 감안하여 5% 이상 적용 요건을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분리과세 세율은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배당 유인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14%, 20%, 35%)을 제시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분리과세 세율(35%)이 대주주(1년 이상)의 자본이득세율(25%)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배당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⁶⁸⁾ 따라서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은 재정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세제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기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고려하여 향후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

68) 김익환, 「"배당주 어떻게해"...35% 분리과세율에 실망한 시장 [2025 세제개편안]」, 『한국경제』, 2025.7.31.

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간 과세형평성이 저하되어 금융자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합하면,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 국세청, 「배당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현황 회신자료」, 2025.7.
- * 기은선·황문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4.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31.
- * _____,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7.31.
- * 김선임·손달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5.3.17.
- *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23판, 서울: 삼일인포마인, 2023.
- * 김익환, 「"배당주 어떻게해"...35% 분리과세율에 실망한 시장 [2025 세제개편안]」, 『한국경제』, 2025.7.31.
- * 문성훈·임동원,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2019.
- * 신호영·정안수, 「기업특성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지분율 중심으로」, 『경영교육논총』 제45권, 2007.
- * 오윤,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8권 제2호, 2012.
- * 우춘식, 「현금배당정책의 횡단면적 특성과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제19권 제1호, 1989.
- * 이상엽·홍우형,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 이상엽,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20.
-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2)」, 2025.4.24.
- * 이예지,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현안분석 제325호), 2024.7.24.
- * 전병목·이승식,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세법연구 06-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 *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세법연구 2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 차병섭·이영, 「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권 제4호, 2007.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2022~2024) 배당실시 현황 및 주요 장기 추이 등」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2025.5.12.
- *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13-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 Ernst & Young(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4-25」, 2025.
- * Haberer, M. 2004. Might a securities transaction tax mitigate excess volatility? Some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CoFE discussion paper 04-06. Konstanz : Center of Finance and Econometrics, University of Konstanz.
- * Hanlon, M. and S. Heitzman,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127-178. 2010.
- * Harding, M. and Marten, M.,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s, interest and capital gains: The debt equity bias at the personal level”,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34, 2018.
- *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1936.
- * OECD, *Combined (corporate and shareholder)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 income*, <<https://data-explorer.oecd.org/>>
- * Poterba, J., and L. Summers, New Evidence That Taxes Affect the Valuation of Dividends, *Journal of Finance* 39: 1397~1415, 1984.

〈웹페이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 * GOV.UK, <<https://www.gov.uk/>>
-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 République Française, Impôt sur le revenu-Plus-values sur valeurs mobilières, 2025.6.6., <<https://www.service-public.fr/>>

R E P O R T · L I S T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58호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2025.07.23.	최진응
제357호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2025.07.14.	김인태
제356호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25.07.11.	심성은
제355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5.06.27.	배재현 · 유제범
제354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2025.05.29.	김진수
제353호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향 - 국가긴급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2025.05.14.	김선화
제352호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	2025.05.13.	허민숙
제351호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제	2025.04.09.	김여라
제350호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2025.04.07.	허민숙
제349호	제21대 독일 연방의회선거 결과와 정부구성 전망	2025.03.27.	허석재
제348호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5.03.11.	배재현
제347호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2025.03.07.	박소영
제346호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	2024.12.31.	이덕난
제345호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2024.12.31.	최진응
제344호	러우 전쟁과 군비 경쟁 - 유럽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징병제 재도입 -	2024.12.30.	심성은
제343호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2024.12.27.	김경민
제342호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	2024.12.27.	구슬이 · 양동욱
제341호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2024.12.26.	김은정
제340호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	2024.12.26.	김나정



NARS 현안분석 제359호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